

제 1642 호

전라남도보

서기 1985년 1월 21일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발행소: 광주시 광산동 13
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
우편번호 500

목 차

1. 전라남도 조례 제 1494 호 전라남도 지방 고용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 제 1495 호 전라남도 공인 조례중 개정
2. 전라남도 훈령 제 659 호 전라남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 개정
3. 전라남도 고시 제 5 호 돼지고기 연등가격 조정
제 6 호 금성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제 7 호 보안림 해제 결정
4. 전라남도 공고 제 22 호 축산물 가공품 품목허가
제 23 호 1985년도 제 1 회 간호보조원 자격 시험 시
행계획 공고
제 24 호 강진 제 1 토지 구획정리 사업계획(기간연기)
인가
제 25 호 지도제작 사업 완료
제 26 호 어업 면허 처분

회								
람								

-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비치용 도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 27 호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허가 사항 변경

제 28 호 건설기술자 면허 취소

제 29 호 관인 개각

제 30 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 31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 실효

제 32 호 전라남도 농어촌 소득개발 기본계획

조 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1 월 12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조례 제 1494 호

전라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 5 급이상 공무원 ” 을 “ 5 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 으로 한다.

제 5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 연령이 55 세 이하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담당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3 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 2 조 (임용권자) 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 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 5 조 (근무상한 연령) ① ② (생략) (신 설)	제 2 조 (임용권자) ① 5 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제 5 조 (근무상한 연령)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 연령이 55 세 이하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담당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 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1 월 21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조례 제 1495 호

전라남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

전라남도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4 항중 “창구즉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 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 2 조 (공인 의 비치 사용) ④ 도지사, 출장소장 및 그 지 소장은 창구 즉결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 다.	제 2 조 (공인 의 비치 사용) ④ 도지사, 출장소장 및 그 지 소장은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 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 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훈령

전라남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85 년 1 월 15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훈령 제 659 호

전라남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 개정

전라남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사무분장) 경찰국 사무분장표, 통신과 관리계 사무분장 사항 “9”
항을 신설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기술계 사무분장 사항 “8”항을 삭제한다.

과 별	계 별	사 무 분 장 사 항	비 고
통 신	관 리	9. 통신 보안 유지 운용 ① 암호 및 음어자재 운용 관리 ② 에스·오·아이 관리운용 및 전파 ③ 암호 및 음어자재 수령 배포 반납 ④ 유무선 감청 ⑤ 통신보안 교육 및 음어숙달 훈련 ⑥ 통신보안 확인 ⑦ 2 호기 및 3 호기 파악 관리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 5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 (농수산부 훈령 제 561 호) 제 9 조
의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1985. 1. 15.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역별 연동가격

(단위 : 500 g / 원)

적 용 지 역	현 행	조 정	증 감
박피 (광주, 목포, 광산, 함평, 무안, 승주, 보성, 강진)	1,600	1,800	200
미박피 (기타지역)	1,450	1,600	150

2. 시행일자 : 85. 1. 17.

돼지고기 연동가격 조정 홍보 (안)

- 근거 : 전라남도 고시 제 124 호 (84. 9. 4) 에 의한 돈육 연동가격표
- 사유 : 산지 생돈가격 및 축산물 도매시장 돈지육 경락가격 상승
- 상승 명세

구 분	단 위	당초 (84.12.11)	현재 (1.11)	상승율 (%)
생 돈 가 격	두 당 (규 격 돈)	124 천 원	139 천 원	12
돈 지 육 경 락 가 격	키 로 그 램	2,000 원	2,400 원	20

- 조정 명세

(단위 : 500,그램 / 원)

적 용 지 역	현 행	조 정	증 감	인 상 율 (%)
박피 (광주, 목포, 광산, 무안, 함평, 승주, 보성, 강진)	1,600	1,800	200	12
미박피 (기타지역)	1,450	1,600	150	10

- 시행일자 : 85. 1. 17.

전라남도 고시 제 6 호

금성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금성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5. 1. 17.

전라남도지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 시행자의 위치 : 금성시 토계동 671-9 번지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금성도시계획사업

명칭 : 도로(중로 3 류 2 호선) 개설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599 m^2

규모 : $L = 100 m$ $B = 12 m$

4. 시행자의 성명, 주소 : 금성시장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 착수 : 1985. 1 인가일

준공 : 1985. 12. 2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단위 : m ²)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금성시 삼영동	5.4	도로	893	388	금성시 송월동 516	최 승 환	없	음	
2	"	5.8	임야	13,289	208	광주시 남동 98	학교법인 백인학원	없	음	
계		2 필지		14,182	596					

지 장 물 건 기 본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종 류	단 위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금성시 삼영동	5.4	도로	주 택	m ²	14	금성시 영강동 17	조 종 남	없	음	전 파
"	"	"	"	창 고	"	14	"	"	"	"	"
"	"	"	"	변 소	"	2.30	"	"	"	"	"
"	"	"	"	담 장	"	1.90	"	"	"	"	"
"	"	"	"	사철나무	주	1	"	"	"	"	"
"	"	"	"	가죽나무	"	1	"	"	"	"	"
"	"	"	"	감나무	"	2	"	"	"	"	"
"	"	"	"	탱자나무	"	1	"	"	"	"	"
2	금성시 삼영동	5.4	도로	주 택	m ²	26.70	금성시 영강동 20	한 연 례	없	음	전 파
"	"	"	"	창 고	"	10.50	"	"	"	"	"
"	"	"	"	변 소	"	3.0	"	"	"	"	"
"	"	"	"	장독대	식	1	"	"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 류	단 위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	금성시 삼영동	5.4	도로	수 도	식	1	금성시 영강동 20	한 연 례	없	음	
"	"	"	"	오동나무	주	3	"	"	"		
"	"	"	"	대나무	식	1	"	"	"		
3	금성시 삼영동	5.4	도로	주 택	m ²	25.10	금성시 영강동 150	손 서 운	없	음	전 파
"	"	"	"	우 사	"	12.40	"	"	"		"
"	"	"	"	창 고	"	8.30	"	"	"		"
"	"	"	"	수 도	식	1	"	"	"		
"	"	"	"	장독대	"	1	"	"	"		
"	"	"	"	탱자나무	주	2	"	"	"		
"	"	"	"	대추나무	"	6	"	"	"		
"	"	"	"	감나무	"	4	"	"	"		
"	"	"	"	오동나무	"	2	"	"	"		
"	"	"	"	가죽나무	"	2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종 류	단위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	금성시 삼영동	5.8	임야	주 택	㎡	23.10	금성시 영강동 17	서문빈	없	음	전 파
"	"	15.1	"	"	"	11.30	"	"	"	"	"
"	"	5.8	"	창 고	"	10.30	"	"	"	"	"
"	"	"	"	변 소	"	0.80	"	"	"	"	"
"	"	"	"	계 단	식	1	"	"	"	"	
"	"	"	"	담 장	㎡	7.80	"	"	"	"	
"	"	"	"	장독대	식	1	"	"	"	"	
"	"	"	"	카레기	"	1	"	"	"	"	
"	"	"	"	대 문	"	1	"	"	"	"	
"	"	"	"	감나무	주	1	"	"	"	"	
5	금성시 영강동	15.1	임야	주 택	㎡	22	금성시 영강동 25	김동술	없	음	전 파

전라남도 고시 제 7 호

산림법 제 6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1985. 1. 19.

전라남도지사

1. 보안림 해제조서

산림소재지					보안림		해제 면적	산림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적	면적	종류		주소	성명
곡성	옥과	합강	산 154	5.61	5.61	토사방비	1.00	곡성, 임면, 송전 145	정상호
계			1 필지		5.61		1.00		

2. 해제사유 : 산림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3 호 (개간 적지)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 22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품 품목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1985. 1. 14.

전 라 남 도 지 사

1. 작업장명 : 영암 축산물 가공장
2. 소재지 :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59
3. 대표 : 박 준 일
4. 허가사항 : 별첨
5. 허가조건 : 수입쇠고기 포장육과 동일 제조시 수입쇠고기 포장육 확인
검사원의 확인 절차 이행후 출고
6. 허가일자 : 1985. 1. 14. 끝.

허가번호	제 품 명	상 품 명 기 타
163-3-1-8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포장육) -불고기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불고기
163-3-1-9	포장육(") -등심구이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등심구이
163-3-1-10	포장육(") -국거리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국거리
163-3-1-11	포장육(") -장조림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장조림
163-3-1-12	포장육(") -분쇄육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분쇄육
163-3-1-13	포장육(") -갈비	우진국내산 쇠고기 별 첨 갈비

1985년도제 1 회간호보조원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

1985 년도 제 1 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을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985. 1. 15

전라남도지사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85.1.28 ~ 2.2 (6 일간)
(우편접수시는 85.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나. 교부 및 접수처 : 전라남도 서무과 고시제

2. 시험일시 · 장소 및 합격자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필 기 시 험 (실기포함)	85. 2. 28	85. 2. 25 도청계시판공고	
합격자발표	85. 3. 16	도청계시판공고	

3. 응 시 자 격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공고일 현재 본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또는 본도에 소재한 강습소에서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 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국·공립 간호제 강습소 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제 강습소에서의 학과교육 740 시간 이상과 강습소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과정 (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 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보조원 시험에 합격한자.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필기시험	○ 기초간호학 개요	35 %
	○ 보건간호학 개요	20 %
	○ 공중보건학 개요	10 %
	○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5 %
실기시험	○ 간호보조원분야 실기에 관한문제	30 %

5. 시 험 방 법

필기 및 실기시험을 병합 필기시험으로 실시

6. 합 격 자 결 정

매과목 만점의 40 %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7. 제 출 서 류

- 가. 응시원서 1 통 (본도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증지참 (미소지자는 주민등록초본제시)
다. 강습소장이 발행한 간호보조원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지참
라. 사진 4 매 (6 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합판)
마. 응시수수료 : 2,000 원 (전라남도 수입증지)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 (청남색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시험합격후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있을시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한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간호보조원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신원증명서, 건강진단서는 시험합격자 발표후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일까지 미제출시는 시험합격을 취소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서무과 고시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전화 : (교환) 광주 22 - 0011, 27 - 5111
구내 253

전남 공고 제 24 호

강진 제 1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변경을 (기간 연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 강진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85. 1. 5.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진 도시계획 제 1 토지 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동성, 남성, 평동리 각 일부
3. 시행면적 : 156,847 제곱미터 (47,446.2 평)
4. 시 행 자 : 강진군수
5. 시행기간 ○ 당초 : 1978. 11. 9. ~ 1984. 12. 31.
○ 변경 : 1978. 11. 9. ~ 1985. 12. 31. 끝.

전라남도 공고 제 25 호

'84. 측지 및 지도제작 사업 종료 공고

측량법 제 8 조 1 항 2 항 규정에 의거 국립지리원에서 실시한 측지 및 지도제작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985. 1. 15.

전라남도지사

사업명 : 기본 측량

세부사업명 시도	삼각점 복구	정밀삼각 측량	정밀수준 점복구	연안해역 기반조사	중력측량	지구자 기측량	천문 측량	인위 측량	공성 측량
전 남	금성, 장성 영광, 함평 광산, 나주 무안			신안, 해남 진도	광주, 담양 곡성, 화순 장흥, 나주 보성, 고흥 영암, 승주 강진			신 안	

사업명 : 지도 제작

세부사업명 시도	1/5,000 지형도 제작	1/5,000 지형도 수정	1/25,000 기본 도 수정	1/25,000 토지 이용현황도수정
전 남	진 도	광주, 장성, 담 양, 광산, 나주 화순	곡성, 승주, 순 천, 구례, 광양 영광, 함평, 신 안, 목포, 해남 영암, 금성, 강 진, 장흥	

전남 공고 제 26 호

수산업법 제 8 조 제 1 항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15.

전 라 남 도 지 사

어업면허처분내역

면허번호	양식물	어업권자		어장위치	면적	면허기간	비고
		주소	성명				
제 6011 호	김	신안, 비금, 신원	어촌계장 김호삼	비금, 수대	20.	85. 1. 92. ~ 1. 1.	부활
제 6012 호	"	"	"	"	2.	"	"
제 6013 호	"	" 수치	어촌계장 박연택	" 수치	10.	"	"
제 6014 호	"	"	"	"	10.	"	"
제 6015 호	"	보성, 벌교, 벌교	자정우	남양, 신흥	14.	85. 1. 95. ~ 1. 1.	"
제 6016 호	"	고흥, 남양, 신흥	정복심	"	12.	"	"

전라남도 공고 제 27 호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허가사항 변경허가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40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전 라 남 도 지 사

1. 작업장명 : 광양 1 급도축장
2. 소재지 : 광양군 광양읍 용강리 778
3. 변경허가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작업장 명칭	광양 일반도축장	광양 1 급도축장	• 폐수처리장은 환경 보전법의 시설기준 에 맞도록 시설
작업실	66 m^2	89.1 m^2	
계류사의 4개		44.5 m^2	
부속건물			
계	66 m^2	133.6 m^2	

전라남도 공고 제 28 호

건설기술자 상위면허 취득에 따른 하위 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공고한다.

1985. 1. 17.

전라남도지사

아 래

면허번호	면허종목및 등 급	면허년월일	성 명	주 소	취 소 사 유
8189	토 목 기 사 2 급	82. 11. 26	김 태 선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553	상위면허 취득 (토목기사 1 급)
8060	"	82. 10. 8	허 현 욱	광주시 동구 산수 2 동 425-20	"

- 끝 -

전라남도 공고 제 29 호

71. 5. 29 조각 사용중인 고흥경찰서장 관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개각 전라남도 공인 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5.

전라남도지사전석홍

1. 이 관인은 85. 1. 21 부터 사용한다.

2. 개각 관인명 및 서체 규격 인영 별첨

관 인 대 장

기관명 : 고흥경찰서

구 신

등 록	1971년 5월 29일	검 인	
새 긴 날	1985년 1월 14일		
새 긴 사람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9 길인당 양 선 호		
재 료	수 우 각	안의형상	정 사 각 형
적 요	장기 사용으로 인해 인명마멸로 수우각으로 재조각코저 함.		

전남 공고 제 30 호

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18.

전 라 남 도 지 사

존 속 기 간 연 장 허 가 명 세

면허번호	양식물	면 적	어업권자주소	성 명	어장위치	허가기간	비 고
제 5821 호	김	60,000 ^{m²}	완도, 완도, 군내 822-83	완도군 수협장	고금, 내동	85.2.13-92.2.12	기간만료로 1회연장
//제5820호	//	70,000 ^{m²}	//	//	고금, 녀도	//	//
//제5819호	//	120,000 ^{m²}	//	//	고금, 가교	//	//
//제5818호	//	^{m²}	//	//	// //	//	//
//제5817호	//	140,000 ^{m²}	//	//	// //	//	//
//제5816호	//	180,000 ^{m²}	//	//	고금, 용초	//	//
//제5815호	//	425,000 ^{m²}	//	//	고금, 칠인	//	//
//제5814호	//	455,000 ^{m²}	//	//	고금, 봉명	//	//
//제5908호	//	210,000 ^{m²}	//	//	금일, 세포	//	//

// 제5788호	//	280,000㎡	//	//	금일, 차우	//	//
// 제5781호	//	300,000㎡	//	//	// 세포	//	//
// 제5780호	//	300,000㎡	//	//	// "	//	//
// 제5779호	//	224,000㎡	//	//	// 도장	//	//
// 제5778호	//	120,000㎡	//	//	// 서성	//	//
// 제5958호	//	200,000㎡	//	//	소안, 월항	//	//
// 제5919호	//	780,000㎡	//	//	// 비자	//	//
// 제5918호	//	263,000㎡	//	//	// 맹선	//	//
// 제5917호	//	304,000㎡	//	//	// 가학	//	//
// 제5916호	//	150,000㎡	//	//	// 월항	//	//
// 제5909호	//	510,000㎡	//	//	// 충도	//	//
// 제5915호	//	220,000㎡	//	//	// 정동	//	//
// 제5945호	//	600,000㎡	//	//	고금, 정자	//	//
// 제5947호	//	540,000㎡	//	//	// "	//	//
// 제5948호	//	360,000㎡	//	//	// 방	//	//
// 제5949호	//	630,000㎡	//	//	// "	//	//
// 제5813호	//	80,000㎡	//	//	// 내리	//	//
완도양식 제 264 호	//	76,000㎡	//	//	소안, 구도	//	//
// 제 266 호	//	244,000㎡	//	//	// 이월	//	//
// 제 268 호	//	52,000㎡	//	//	// 횡간	//	//
// 제 231 호	//	600,000㎡	//	//	약산, 장용	//	//
// 제 232 호	//	580,000㎡	//	//	// "	//	//
// 제 239 호	//	60,000㎡	//	//	// 우두	//	//
// 제 240 호	//	136,000㎡	//	//	// 천동	//	//

면허번호	양식물	면적	어업권자주소	성명	어장위치	허가기간	비고
완도양식 제 241 호	김	424,000㎡	완도, 완도 군내 822-83	완도군 수협장	약산, 화가	85.2.13- 92.2.12	기간만료로 1회연장
〃 제 242호	〃	160,000㎡	〃	〃	〃 업고	〃	〃
〃 제 269호	〃	144,000㎡	〃	〃	노화, 동천	〃	〃
〃 제 270호	〃	48,000㎡	〃	〃	〃 이포	〃	〃
〃 제 271호	〃	40,000㎡	〃	〃	〃 〃	〃	〃
〃 제 272호	〃	128,000㎡	〃	〃	〃 송도	〃	〃
〃 제 273호	〃	64,000㎡	〃	〃	〃 하구 통도	〃	〃
〃 제 274호	〃	136,000㎡	〃	〃	〃 참도	〃	〃
〃 제 276호	〃	88,000㎡	〃	〃	〃 등산	〃	〃
〃 제 277호	〃	168,000㎡	〃	〃	〃 부황	〃	〃
〃 제 278호	〃	68,000㎡	〃	〃	〃 장사도	〃	〃
〃 제 285호	〃	164,000㎡	〃	〃	〃 방서	〃	〃
〃 제 286호	〃	56,000㎡	〃	〃	〃 서리	〃	〃

전라남도 공고 제 31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 실효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실효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5. 1. 21.

전라남도지사 전 석 홍

면허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남 56 호	(주)원개발	이 찬 형	광주시동구계림동 465-3

전라남도 공고 제 32 호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 4 조 및 동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라남도 농어촌소득원 개발기본 계획을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 받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85. 1. .

전 라 남 도 지 사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計劃

I. 計劃樹立 根據와 與件

1. 根 據

法律 第 3,689 號 ('83. 12. 31)

農漁村 所得源 開發 促進法 第 4 條 및 全施行令 第 5 條

2. 農漁村의 與件

가. 所得比較 (農外 所得率)

區 分	1970	1980	增 加 ('80 ~ '70)
韓 國	24.2 %	34.8 %	10.6 %
日 本	63.5 %	78.9 %	15.4 %

※ '83 韓國, 35 % 台灣 64.6 % 日本 80.8 %

- 農家所得은 農外所得部門에 比하여 所得隔差가 顯著함.
- 主穀增産에 依한 農家所得 増大는 限界點에 이르렀음.

※ 農家所得 比較

(單位 : 千圓)

區 分	1973	1978	1983
都市勤勞者家計所得	550	1,916	4,991
農 家 所 得	481	1,884	5,128
對 比	(87.5 %)	(98.3 %)	(102.7 %)

나. 一般 農家

1) 農產物은 農地의 限定性에 따라 많은 增産은 限界가 있으며 消費 또는 食糧의 非彈力性 때문에 一定量 以外의 需要를 機待할 수 없음.

2) 食生活 構造의 變化로 果樂類와 肉類의 消費는 増加하나 穀物

의 消費는 感少하는 趨勢임.

3) 農產物 價格 正策의 어려움.

- 國內 農產物 價格은 國際價格과 隔差가 甚함.
- 자른 豐凶과 帶結變化에 따른 國內農產物價格의 騰落이 甚함.

4) 營農 規模의 零細性は 韓國 農村의 宿命的 脆弱點임.

- 農家戶當 平均 耕地面積 0.99 ha (논 0.62 ha, 밭 0.37 ha)
- 1 ha 未滿의 農家가 全體의 67 %
- 農家人口의 過多 韓國 總人口의 24.5 %

日本 // 9.56 %

其他先進國 總人口의 5 % 內外

다. 畜 產

- 畜產은 漸次 擴大一路에 있으나 限界性이 있음.
- 地形 및 氣象條件 때문에 草地 開發의 脆弱性을 안고 있음.
- 國際 競爭力이 없는 畜產物의 自給率을 無理하게 높일 境遇 生産者나 消費者의 被害 加重과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을 招來케 됨.

II. 農漁村所得開發

1. 目 的

今後 農村은 食糧供給의 次元을 넘어서 農漁村의 遊休勞動力과 資源을 活用하여 副業園地를 造成하고 觀光農業을 開發하며 工場을 誘致하여 農家所得構造를 改編하므로써 所得과 福祉가 向上된 安定的 生活基盤을 造成하는데 있음.

2. 方 針

- 國民의 食糧을 自給할 수 있는 生産基盤을 持續적으로 擴充
- 農外所得源開發育成으로 都. 農 間의 所得隔差 縮小에 注力

- 버려진 農漁村의 賦存資源을 開發 最大한 活用
- 農村과 隣近 都市의 遊休人力을 有機的으로 連繫 雇傭期會를 擴大
- 農業 所得에 比하여 낮은 水準인 農外所得의 劃期的 増大를 企圖

Ⅲ. 部門別 推進計劃

1. 農漁村 地域工業開發

가. 現 況

○ 麗川, 重化學工業地區 育成과 光州市의 工業地域開發 等 大都市 및 持定地域 中心의 工業開發은 促進되었으나 農漁村 地域에 工業開發은 疎外되었음.

○ 農村地域은 道路 通信 等 基盤施設 未備로 工業地域造成의 立地與件이 不利함.

○ 資金 및 資源調達 技術人力 販賣 厚生問題 等이 都市에 比하여 不利함.

나. 造成 方向

1) 誘致 方針

- 農漁村 賦存資源과 雇傭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勞動集約的 工場을 誘致
- 勞動力 確保 輸送與件 原資材 供給等を 勘案하여 地域實情에 맞는 工場을 誘致
- 農產物生産 및 自然境觀을 沮害하지 않은 非公害 工場을 誘致
- 當該地域의 雇傭 및 所得増大로 地域開發의 效果가 큰 地域을 選定

2) 指 定 要 件

가) 對象地域

- 人口 10萬未滿의 市地域과 全郡 및 出張所 地域

나) 除外 地域

- 人口 10 萬以上의 市地域 ◦ 工業團地가 있는 邑面 地域
- 產業基地 開發地域中 重化學基地가 있는 邑面
- 工業配置法의 規定에 依한 移轉 促進地域 및 制限 整備 地域
- 새마을 工場이 5個以上 있는 市. 邑. 面 地域
- 其他 道知事가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地域

다) 規 模

- 地區當 10,000 坪 ~ 30,000 坪 以內

라) 指 定 計 劃

- '84 : 1 個所
- '85 以後 入住 實績 評價 追加 指定

마) 指 定 節 次

- 市長, 郡守, 出張所長이 候補地 造成計劃을 道知事 經由 經濟企劃處長官에 提出
- 實務作業班→實務委員會→中央農資材所得源開發委員會審議→市長, 郡守, 出張所長指定

바) 事 業 主 管

- 市長, 郡守, 出張所長

사) 事 後 管 理

① 分讓 및 移轉

- 市長, 郡守, 出張所長, 責任下에 入住業體에 對한 事後管理와 分讓 및 移轉

② 分讓後 管理

- 入住業體의 要請 또는 同意가 있을 境遇 管理團體를 構成 하여 委託管理

다. 入住業種選定

1) 業 種

- 地域 住民의 雇傭 및 所得増大 효과가 큰 業種
- 地域 住民이 運營하는 業種
- 農漁村地域의 賦存資源을 活用하는 業種
- 販路가 確保되어 있거나 確保할 수 있는 業種
- 앞으로 農漁村 地域 需要가 増大할 것으로 認定되는 業種
- 其他 道知事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業種
- 다만, 施設 過剩業種이나 公害業種 및 大規模 施設業種은 除外

2) 事 業 者

- 當該 事業을 經營管理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이 있는 者
- 所要資産이 있고 信用이 確實한 者

3) 入住 承認 節次

- 市長, 郡守, 出張所長은 業體의 申請에 따라 環境廳과 中小企業振興工團에 妥當性 檢討를 依頼하고 그 結果의 通報에 依하여 入住承認

4) 入住承認取消

- 入住承認後 2年以內에 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認取消
- 事業 着手後 3個月 以上 長期間 休業하여 再稼動의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判斷된 때에는 承認取消可能

5) 入住 業體의 支援

㉔ 行政 節次 簡素化

- 入住是認으로 工場 設置에 따른 各種 認許可 節次 省略

㉔ 不實化 防止

- 入住承認에 앞서 中小企業振興工團이 事業性を 線密하게 檢討

㉕ 租稅支援 (既 措置)

- 投資準備金의 損費 認定 特別 減價償却 認定
- 取得稅 登録稅 免除
- 財産稅 減免

㉖ 金融支援 (措置計劃)

- 農漁村 工業支援資金設置 (中小企業振興工團)

施設資金	所要資金의 70 % (3 億圓 以內)	3 年措置 5 年均分 償還
運營資金	// 30 % (1 億圓 以內)	1 年措置 2 年均分 償還

㉗ 技術 및 經營指導

- 中小企業振興工團支援

㉘ 販路支援

- 官納時 隨意契約이 可能하도록 推進
- 輸出支援 및 大企業과 販賣 系列化 斡旋

㉙ 人力開發

- 入住業體 布望時 委託 教育 斡旋

라. 工場立地利用 調整

- 農工地區의 用途變更이 必要한 때에는 市長, 郡守, 出張所長 道經由 建設部長官에게 要請
- 建設部長官은 關係部處와 協議後 國土利用計劃審意會議를 거쳐 變更 告示

마. 生産 基盤 施設 整備

1) 用地買入 道路, 用水, 電力, 通信 等 公共施設은 市長, 郡守, 出張所長이 責任支援 造成

2) 事業 費 負擔

區 分	國 庫		地 方 費	
	補 助	融 資	補 助	融 資
用 地 買 入		70 %		30 %
地 區 造 成	30 %			70 %
地 區 內 道 路 進 入 道 路	70 %		30 %	
電 力 通 信	100 %			
設 計 費 其 他	100 %			

바. 職業訓練 및 就業促進

1) 職 業 訓 練

㉔ 從事員中 入住 事業者가 希望時에는 中小企業振興工團 또는 道 農民教育院 및 光州, 木浦, 順天, 職業訓練院에 委託教育 斡旋

㉕ 道內 工團 또는 關聯 業體에 實習教育 斡旋

2) 就 業 促 進

㉔ 當該地域 住民中 遊休勞動力 優先 活用

㉕ 道 農民教育院 및 光州, 木浦, 順天, 職業訓練院 修了者 雇傭

사. 環 境 保 全

1) 工場用地의 綠地 面積

◦ 工場垡地面積 3,000 m^2 以上 10,000 m^2 未滿의 境遇 $\frac{15}{100}$ 以上

◦ 工場垡地面積 10,000 m^2 以上の 境遇 $\frac{20}{100}$ 以上

2) 環境 施設 面積 (綠地 包含)

◦ 工場 垡地 面積의 $\frac{25}{100}$ 以上

3) 公害業種의 立地制限

◦ 特定 有害物質 排出 工場을 上水取水源 等 用地 利用 地域의 上流에 設置하는 業體

◦ 汚染物質 排出工場을 住民 또는 農耕地에 危害를 加할 우려가 있는 地域에 設置하는 業體

◦ 當該 地域의 環境 等 自然 條件을 顯著하게 害한다고 判斷되는 業體

4) 其他 環境 保全에 關하여는 工場 立地 基準告示

(商工部 告示 第 79 ~ 11 號) 中 環境保全에 關한 事業을 適用)

2. 產地農水產物 加工工場 建設

가. 施 設 方 向

○ 農漁村 生産 原料圈 中心으로 加工施設을 擴充하여 農水產物의 需給 調節 誘導

○ 農漁村 遊休 勞動力의 雇傭期會 擴大

○ 年中 稼動이 可能하도록 複合 加工 形態로 誘導

○ 指定時 嚴格한 事業性 檢討와 金融技術 販賣支援 強化

○ 食生活 變化에 따른 果實酒 等 新製品 開發 普及 支援

나. 工 場 現 況

'83 { 羅州 三井 食品 ——— 무우, 고구마, 질간고구마 加工
莞島 푸른 農園 ——— 桐栢油, 단무지 生産
'84 { 麗州, 東光産業 ——— 바지락, 취취포, 마늘 加工

— 海南 明光息品 — 맛김, 화입김, 양파 加工

다. '85 事業推進

- 對象 工場 : 2 個所
- 對象 業種 : 加工이 容易하고 生産 過剩으로 出荷 調節이 必要한 品目을 中心으로 한 複合 加工型 工場을 優先
- 對象地域 : 生産團地를 中心으로 主加工品目 集中 生産 可能的 地域을 優先 選定
- 流通의 圓滑과 活用愛 提高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 生産團地 또는 隣近 農水産物 集産地에 設置可能
- 對 象 者
 - 食品 業體로써 直接 投資 또는 系列 企業 形態로 主産地에
 - 農水産物 1次 加工工場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
 - 當該 事業을 經營 또는 管理할 充分한 能力과 意慾을 가진 者
 - 資産과 信用이 確實한 者
- 資 金 支 援
 - 融資 限度 : 總 施設置의 70 % 以內
 - 償 還 : 3年 据置 5年 均分 償還
 - 金 利 : 一般 貸出 金利 (年 10 %)
 - 貸出 條件 : 擔保 貸出

3. 農漁村 副業 團地 育成

가. 賦存 資源 活用으로 農外所得 増大

- 사라져 가고 있는 有望副業 製品發掘 勸奨
- 副業製品 生産 團地化 및 品質向上
- 地域住民의 協同과 多數 農家의 參與 誘導

나. 推進方向

- 民俗工藝品 團地를 重點 育成 傳統文化的 繼承과 觀光産業 基盤 構築
- 食品 加工 團地の 集中 造成으로 農水畜物 需給調節
- 勞動 集約的 業種을 積極 誘致하여 遊休 勞動力을 最大限 活用
- 團地 代表 主動下에 地域住民의 參與를 積極 誘導
- 行政 指導, 農協의 機能別로 分擔 積極 支援

다. 造成計劃

- 原資材의 集產地를 中心으로 品目別 團地 造成
- 技術 蓄積이 되었거나 可能的 地域의 團地化
- 1 마을 1 副業團地 造成

라. 對象品目

- 原料의 安定的 調達이 可能的 品目
- 品 目

業 種 名	品 目
民 俗 工 藝	竹細品, 玉石工藝, 莞草加工, 陶瓷器, 낙시대, 붓, 韓紙, 木工藝, 참빗, 李祖家具 等
食 料 品	도토리묵, 단무지, 표고가공, 벌줄가공, 염장미역, 어포, 조개포, 해태가공, 굴비가공, 통조림 等
農水産資料	싸리가공, 찹가공, 인삼밭, 새끼, 배 봉지 만들기 等
織 維 織 物	마포, 장갑, 자수, 면직물, 웨타 等
一般工產品	연탄화덕, 벽돌, 세 탁비누, 소독저, 옷걸이 等

마. 園地指定

- 邑, 面長을 經由하여 申請
- 郡守는 農協郡支部長과 協助하여
 - 事業計劃의 妥當性
 - 副業園地의 育成 可能性
 - 園地 事業者의 自己 資本 調達 能力 信用狀能力, 擔保能力, 地域與件 等を 檢討하여 妥當하다고 認定되면
- 道知事가 郡守에게 指定 通報하고 農水産部 長官에 報告

바. 資金支援

- 總 事業費의 70 %支援 (融資)
- 支援限度
 - 新規園地 — 5千萬원 (施設 및 運營 資金)
 - 既成園地 — 3千萬원 (施設 및 運營 資金)
- 資金用途

- 施設資金 —
 - 建物 및 機械 購入
 - 其他 生産附帶 施設

※ 主된 目的이 土地 購入은 不可

- 運營資金 : 原料 購入 및 生産 經營費

○ 融資條件

- 金 利 : 年 10 %
- 償還條件 —
 - 施設資金 8年 (3年 据置 5年 均分 償還)
 - 運營資金 3年 (1年 据置 2年 均分 償還)

4. 觀光農業開發

가. 開發方向

- 各 勝地 및 觀光休養地를 中心으로 觀光農園을 開發

- 地域別 自然 및 農業與件을 고려하여 觀光地의 連繫 特色 있는 觀光 農園을 開發
- 觀光 農園을 造成 都市民의 休息空間 提供과 農外 所童 增大
- 複合 經營을 兼한 마을 中心의 協同 農園育成

나. 開發 與件 및 展望

- 國立公園 4 個所
 - 閑麗海上 國立公園
 - 靈島海 海上 國立公園
 - 智異山 國立公園
 - 內藏山 //
- 道立公園 4 個所
 - 無等山 國立公園
 - 頭輪山 //
 - 月出山 //
 - 曹係山 //
- 和順 溫泉 1 個所
- 觀光 資源은 農富하나 多再的인 休養地 開發 未治
- 時代의 變遷과 함께 國內外的으로 觀光客 增加 趨勢
- '86, '88 國際體育祭典에 때 맞추어 觀光施設의 擴大 開發 緊要
- 都市生活의 倦怠로 快適한 環境을 憧憬한 都市民에게 休息空間 提供

다. '84 造成

- 和順 溫泉 周邊 — 潭陽郡 大德面 雲山 地區
- 月出山 道立公園入口 — 靈岩郡 靈岩邑 開新里
- 頭輪山 道立公園入口 — 海南郡 三山面 九林面

라. '85 造成計劃

○ 位 置

- 和順 溫泉地區 2 個所
- 白羊寺 周邊 1 個所
- 智異山 // //

○ 與 件

- 和順 溫泉地域
- 內藏山 國立 觀光地域
- 智異山の 境觀利用

○ 主要事業

一 便益施設

進入道路 開設, 駐車場 施設

一 生産基盤 施設

養魚場, 畜産, 果園造成 花卉하우스 造成

마. 資金支援

- 가능한 自己資本을 最大限 調達하며 支援 金額은 總 事業費의 70 %를 超過하지 않도록 한다.

- 觀光 農園 周邊의 道路 駐車場 等 基盤造成 施設은 地方費로 支援

- 支援 限度는 1 個 마을당 50 百萬元 以內

- 支援 資金 用途: 附帶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 等